

긴급입찰공고 사유서

1. 용역요지

- 가. 용역명 : 조지아 츠케니스트칼리 192.5MW 수력발전 건설 타당성조사
- 나. 용역기간 : 계약일로부터 120일간 (2019. 12. 16. 한)
- 다. 사업예산 : 금200백만원

2. 긴급입찰공고 사유

가. 사업의 성격

- 본 용역은 해외건설촉진법 제15조의4 및 국토부훈령 제1151호 제8조제4항에 의거, 우리 기업의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진출 지원을 위해 수행하는 용역임
- 본 용역의 대상사업은 조지아 내 부족한 전력공급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지아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전략사업임
- 조지아 정부지원 하에 현지 사업권자가 타당성조사를 시행하였고, 이를 한국 사업주가 검증한 결과, 타당성 확보가 어려워 조지아 정부(경제부)에 시설물 계획 변경 필요성을 설명하고 변경안을 도출
- 조지아 정부에서는 '20년 PPA 체결(사업승인)을 위해서 금년 내 변경된 시설 계획에 대해 타당성조사 완료할 것을 요청함

나. 긴급입찰 사유

- 본 사업은 제안형 민관협력사업으로 조지아 정부 요청에 따라, '20년 PPA 계약체결을 목표로 추진 중. 이를 위해 사업주는 우선 기술 타당성 검토를 수행 중이며('19.8월 완료), 이를 반영하여 사업수익성 재검토 및 사업구조 확정, 연내 조지아 정부 向 제안을 위해서는 재무타당성 검토가 시급히 필요
- 정상적으로 "협상에 의한 계약"을 추진할 경우(공고기간 40일) 기술 검토 및 자료 작성을 위한 기간이 부족하므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에 근거하여 공고기간 단축 필요